

판공비 지급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판공비 지급 규정

- 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의 판공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정의 및 사용목적)** 판공비라 함은 본 대학교의 운영상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필요불가결한 경비로서 용도를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- 제3조 (지급시기와 방법)** 판공비의 지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출결의서에 사용자인(부서), 사용목적, 금액 등을 기재하여 1차 수령자의 날인을 받고 지급할 수 있다.
- 제4조 (기장처리)** 판공비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의 지출결의서로 대응처리 하며 거래처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5조 (지급의 한도 및 사용권자)** 지급의 한도 및 사용권자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.
- 제6조 (비밀엄수)** 관계직원은 여하의 경우를 막론하고 판공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공개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7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